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04

발의연월일: 2022. 9. 8.

발 의 자:최연숙·권은희·김상훈

노용호 • 류호정 • 안철수

이태규 · 정찬민 · 조경태

조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로 하되,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불과 1개월 동안 해소되기는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실정임. 따라서 기본이 되 는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다 안정 적으로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, 1개월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"1개월간"을 "3개월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긴급지원의 기간 등) ①	제10조(긴급지원의 기간 등) ① -
제9조제1항제1호가목·다목·라목	
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	<u>3</u>
<u>개월간</u> 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	개월간
한 지원으로 한다. <u>다만, 시장·</u>	<u><단서 삭제></u>
군수·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	
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	
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	
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	
<u>수 있다.</u>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